

제 호		
자동차운전학원·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		
학원명		학원
학원의 설립·운영자	성명	
	주소	
행정처분 결정내용	운영정지	년 월 일 - 년 월 일까지 (일간)
	등록취소· 지정취소	년 월 일
사유		
<p>「도로교통법」 제1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() 시·도경찰청 교통과(계)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(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)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시·도경찰청장 직인</p>		
<p>※ 알려드립니다.</p> <p>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</p>		